

# 사전투표에 관한 세칙



주식회사 창원컨트리클럽

## 사전투표에 관한 세칙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칙은 사전투표에 관하여 투표방법, 투표함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용어의 정의)** 주주총회일 이전에 우리 회사에 비치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투입하는 방법을 사전투표라 한다.

### 제3조 (사전투표)

① 사전투표는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의 확인을 받고,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 후, 사전결의소에서 배부하는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투표함에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사전투표는 대리인이 이를 행할 수 없다.

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대표이사가 봉인한 사전 투표함을 비치하고, 그 보관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적절한 방법으로 한다.

④ 사전투표는 선거일 1일 전 17 : 00까지 투표한 경우만 유효투표로 본다.

⑤ 사전투표도 성원 정족수에 포함한다.

⑥ 사전투표와 위임투표를 중복으로 하였을 경우 사전투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.

**제4조 (투표용지의 교부)** 사전투표를 한 주주회원에게는 총회에서 투표용지를 교부 하지 않는다. 단, 수임자는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할 수 있다.

## 부 칙

**제 1 조 (시행일)** 본 세칙은 2012. 3. 27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**제 1 조 (시행일)** 본 세칙은 2016. 12. 14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**제 1 조 (시행일)** 본 세칙은 2021. 9. 15부터 시행한다.